

⑤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5>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신설 2009.4.21>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신설 2009.4.21>

제5조(교지) ①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개정 2004.3.5>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신설 2009.4.21>

제6조(교원) ①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들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제7조(수익응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응기본재산을 확보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 응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10.25>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3.5>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1.4.30, 2005.3.25>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제9조 삭제 <1998.2.24>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제12조(학교현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부칙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2조의7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별표 1의3] <개정 2011.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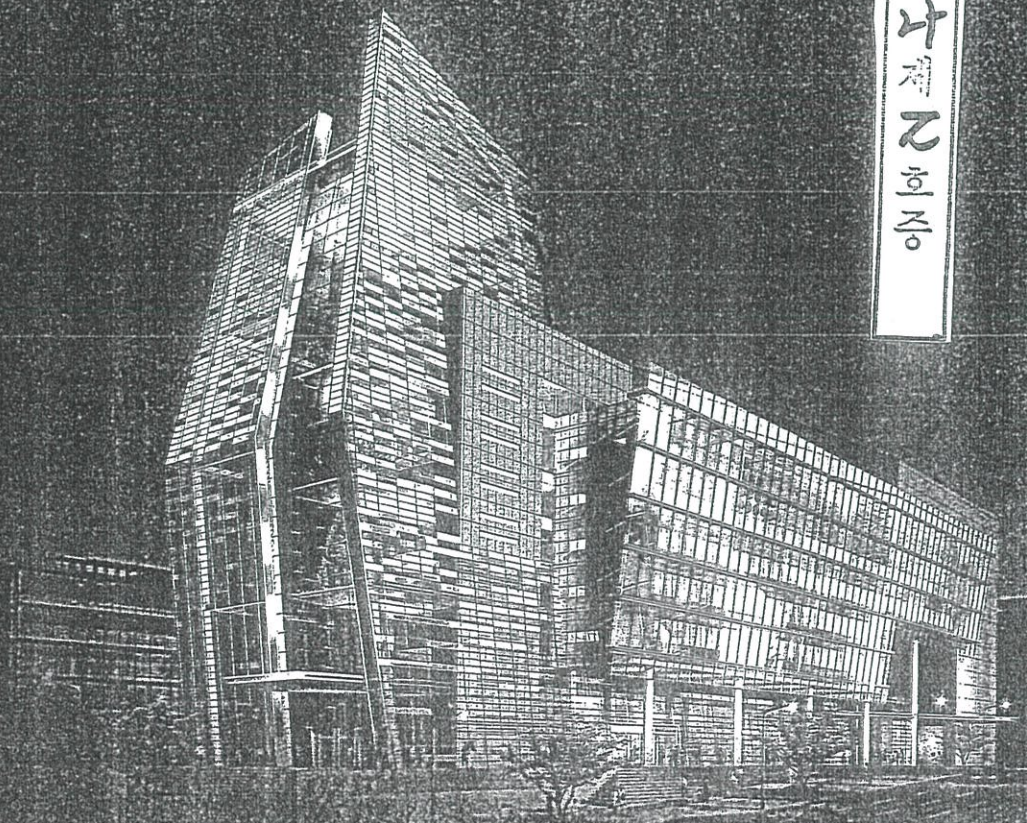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통·폐합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대학과 대학 간 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의 감축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의 감축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가천경원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 신청서
(최종본)

2011. 6

을
나
제
2
호
증



가천경원학원

가천경원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동·폐합 승인 신청서

(최종본)

201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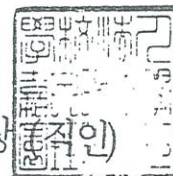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가천경원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 승인
신청서

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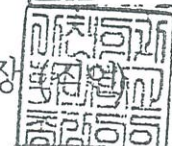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이사장



가천의과학대학교

총 장



경원대학교

총 장



- 목 차 -

I. 총괄표

1. 전임교원 연차별 확보 계획	1
2. 교사 확보율	1
3. 교지 확보율	1
4.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
5. 대학운영경비 부담률	2

II. 대학 일반 현황

【가천의과학대학교】

1. 대학명칭	3
2. 소재지	3
3. 교원현황	3
4. 직원현황	4
5. 학생수	4
6. 대학연혁	5
7. 조직도	7
8. 대학발전계획	8
9. 특성화 추진 실적 및 계획	13

【경원대학교】

1. 대학명칭	17
2. 소재지	17

3. 교원현황	17
4. 직원현황	18
5. 학생수	18
6. 대학연혁	19
7. 조직도	20
8. 대학발전계획	21
9. 특성화 추진 실적 및 계획	28

Ⅲ. 학교 현황

1. '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36
나. 경원대학교	37
2. 편제정원, 재학생 수 입학정원 충원을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39
나. 경원대학교	39
3. 교사확보율(편제정원 기준)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40
나. 경원대학교	40
4. 교사확보율(재학생 기준)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41
나. 경원대학교	41
5. 교지확보율(편제정원 기준)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42
나. 경원대학교	42
6. 교지확보율(재학생 기준)	
가. 가천의과학대학교	42
나. 경원대학교	42
7.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42

IV. 대학 통·폐합 목적 및 기대 효과

1. 통합의 목적 및 필요성	43
2. 대학통합의 기대효과	45
3. 통합대학교 비전 및 발전목표	49
4. 통합대학교 발전전략	51
5. 통합대학교 특성화 계획	56
6. 통합대학교 특성화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61
7. 통합대학교 특성화 추진 방안	68

V. 통·폐합에 따른 201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계획

1. 총괄	70
2. 대학별 세부조정 내역(계열별 기준)	70
3. 대학별 세부조정 내역(단과대학별 기준)	73
4. 통합 학사모형 의의	76

VI. 통·폐합 후 대학 조직도

1. 경원캠퍼스	77
2. 인천캠퍼스	78

VII. 통·폐합 후 교육여건 개선 내용

1.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79
2. 통·폐합 후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계획	79
3.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 조치계획	

가. 원칙-충분한 의견 청취 및 반영	80
나. 재학생 조치 계획	80
다. 교직원 조치 계획	81
4. 폐지되는 대학의 캠퍼스 활용계획	81
5. 대학 통·폐합 안건이 의결된 이사회회의록 사본	84
6. 대학 통·폐합 합의서	86
7. 대학 구성원, 동창회 등의 통·폐합 의견수렴 결과	
가. 교수	87
나. 직원	88
다. 학생	89
라. 동문	91
마. 통합(안)에 대한 교무위원회 심의 현황	92
바. 통합(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	93
사. 통합(안)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93
아. 기타 의견수렴 현황	94

□ 사립대학 통·폐합 심사점검포 제출서	101
-----------------------------	-----

통폐합 승인신청서 본내용 생략

(양이 많아 생략합니다.)

- 내용 확인 필요시 총동문회 사무국에 문의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시행 2011. 1.21]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6호, 2011. 1.21,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02-2100-63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 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통 폐합 시기 이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교지 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교지 교사의 확보율은 통 폐합 심사일 현재 교지 교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건축허가 취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② 통 폐합 승인시 교지 교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로 통 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지 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통 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은 통 폐합 직전 연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학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②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존치기간 이후의 복학생, 졸업생의 편입학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폐지되는 대학의 교직원의 임면은 통 폐합 시기 이전까지는 기존 대학 소속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폐지되는 대학의 장은 통 폐합 시기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되 임기 만료로 본다.
④ 통 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 청산하지 않으며, 통합 후 존치하는 대학에서 승계하여 관리 운영한다.

을
나
제
3
호
증

- ⑤ 통 폐합 이후 존치하는 대학의 장은 폐지된 대학 재학생의 학적관리 등 학사 행정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 ⑥ 통 폐합 신청 후 승인시까지의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통 폐합 신청 대학은 통 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 폐합 신청 대학은 통 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통 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통 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통 폐합 신청의 제한) 통 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의 일방 또는 양 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 폐합 신청을 제한한다.

1. 감사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중 통 폐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행 또는 시정하지 못한 대학
2. 대학설립 인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상 재정상 제재를 받고 등 제재 내용을 해소하지 못한 대학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통 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통 폐합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제2011-6호, 2011. 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理事會會議錄

2011. 4. 28.

을
나
제
4
등
증

學校法人嘉泉瞭園學園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지일자 : 2011년 4월 20일	
이사정수 : 13명	재적이사 : 13명

1. 개최 일시 : 2011년 4월 28일(목) 15 : 00
2. 개최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2층위스테리어 룸
3. 참석 임원(15명) : (이사 12명) 김신복(이사장), 이길여, 고흥길, 김병상, 김정치, 박내희, 송석구, 송석형, 이상우, 이태훈, 전용대, 하금열, 가나다순
(감사 3명) 김준석, 김한규, 변봉덕
4. 불참 임원(1명) : (이사 1명) 박영숙
5. 안건 : 제1호 안건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안)의결의 건
제2호 안건 - 개방감사 선임 의결의 건

6. 회의내용

이사장 김신복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규정에 따라 법인상임이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에 대한 경위 및 성원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개최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이후 법인상임이사에게 전차회의록 보고를 요청하다. 회의록 낭독이 끝난 다음, 참석이사들에게 수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회의록을 통과시키다.
안전상정에 앞서 이사회 참석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회의록에 간서명할 3인의 임원을 이사장 발의, 송석구이사 등의, 김병상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임원중 박내희이사, 송석형이사, 김준석감사를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호선하다.

김신복 의장 : 제1호 안건인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합 의결에 관한 사항을 상정, 그 심의를 구하고 기획처장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별첨1 : 대학 통합(안)>

기획처장(윤원중) : 대학통합에따른 진행경위, 통합대학의 향후 위상, 주요현황, 지표, 대학 발전계획, 특성화 방향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김정치 이사 : 대학에서 교명 확정시 4개안을 가지고 택일한 것인지와 교명 확정 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질의하다.

이재우, 김준석, 송석형

기획처장(윤원중) : 4개안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대학에서 1차 선정하였으며 교명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송석형 이사 :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기획처장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학교발전을 위해 교명변경이 왜 불가피한지에 대해 계속 설명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하다.

아울러 이번 대학 통합으로인해 학교발전이 더욱 기대된다는 의견을 부연 설명하다.

기획처장(윤원중) : 통합(안)에 대한 교무위원회 심의시 학생들도 참석하여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가천대학교로 결정하였고 교직원들의 전폭적인 교명변경 지지도 있었음을 설명하다.

김정치 이사 : 학생들이 4개안외에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윤원중) : 따로 없었다고 설명하다.

김한규 감사 : 총장님의 확고한 학교발전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그동안 우리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하다. 아울러 이번 대학통합을 통해 우리대학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기반도 마련됐다는 의견을 표하다. 다만 교명변경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의 설득작업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표하다.

고흥길 이사 : 동창이나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학교가 더욱 발전해 나갈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표하다.

김신복 의장 :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통합 및 교명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계속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하다.

박내회 이사 : 지난 10년동안 총장님과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타 대학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음을 격려한 후 앞으로도 통합을 통해 명문사학의 반열에 올라갈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다. 이후 가천대학교로의 교명변경이 포함된 본 통합안에 대해 상정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김정치 이사 : 박내회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5/1 18/4 7/6 2/11 6/12/11

김신복 의장 :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음을 알리고 개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1호안건이 상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김신복 의장 : 제2호안건인 학교법인가천경원학원 개방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상정, 그 심의를 구하고 상임이사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별첨2 : 개방감사 추천자 이력서>

상임이사(이상우) : 2011년 6월2일자로 김한규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사중 1명은 개방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의한 제반 추천절차를 모두 거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김한규 현 감사를 개방감사로 추천하였음을 부연 설명하다. (사학법 제20조3항에 의거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송석형 이사 : 추천된 김한규감사는 모교출신으로 그간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경력등을 고려할 때 학교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상정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이태훈 이사 : 송석형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김신복 의장 :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해 동의와 재청이 있음을 알리고 개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2호안건이 상정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아울러 금일 임원들의 의견이 기록된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참석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설명하다. 이후 오늘의 안건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린 다음 폐회를 선언하다. (의사봉 3타 : 폐회 16시 00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이사는 아래에 날인하다.

2011년 4월 28일

학 교 법 인 가천경원학원

의 장 겸 이 사 장

김 신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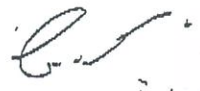
이

사

이

길

여



01 2011- 7월 28일 13시 20분

이	사	고	홍	길	김	이
이	사	김	병	상	김	병
이	사	김	정	치	김	정
이	사	박	내	희	박	내
이	사	송	석	구	송	석
이	사	송	석	형	송	석
이	사	이	상	우	이	상
이	사	이	태	훈	이	태
이	사	전	용	태	전	용
이	사	하	금	열	하	금
감	사	김	준	석	김	준
감	사	김	한	규	김	한
감	사	변	봉	덕	변	봉

이름과 직책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제1호 안건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 의결의 건

1. 통합 추진 경위

- 2010.12.14 : 가천의과학대-경원대학교 통합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2010.12.14 :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실무추진단 설치
- 2011.1~2011.4 : 통합추진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 개최 (통합안 작성)
-분야별 실무위원회 : 학사편제, 행정조직, 교원인사, 발전계획
- 2011.4 : 교·직원 설명회, 학생 설명회, 동문회 설명회 개최
- 2011.4.20 : 통합 합의서 작성(법인이사장, 양 대학교 총장)
- 2011.4.20 : 통합 승인 요청 공문 법인 접수(통·폐합 신청서 첨부)
- 2011.4.28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 이사회 의결
- 2011.4.29 :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 신청서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2. 통합에 따른 주요 내용

- 불임 통합 승인 신청서 참조

*불임 : 통합 신청서 1부.

안건은 기안함

가천의과학대학교 - 경원대학교 통합(안)

1. 통합대학교의 종류

- 통합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으로 한다.

2. 통합대학교의 교명

- 통합대학교 교명은 가천대학교로 한다.

3. 통합대학교의 학사편제

- 통합대학교의 학사편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특성화분야와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양 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를 재구조화한다.

- 2) 통합대학교 학사편제 구성시 양 대학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과(전공)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

- 3) 통합대학교의 학사편제가 재편성될 때, 학과/전공의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교수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여 소속변경을 가능하도록 한다.

- 4) 학사편제중 섬유미술학과와 시각디자인학과는 통합후 시각디자인과로 명칭변경하고 연기예술학과를 신설한다.

4. 통합대학교의 행정조직

- 1) 통합대학교의 행정조직은 대학행정의 선진화와 효율화에 초점을 둔다.

- 2) 양 대학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한다.

- 3) 통합대학교의 비전 달성을 위한 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학생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한다.

가천대학교 기획처

5. 학생관련 사항

- 1) 통합대학교 이전에 입학한 양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 2) 통합대학교 이전에 양 대학에서 휴학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하는데 신분상 그리고 교육상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6. 교·직원 의 신분 및 처우보장

- 1) 통합은 4년제와 4년제 대학의 수평적 통합을 전제로 하며, 양 대학의 현재 교·직원은 통합으로 인한 신분상, 처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2) 양 대학의 교·직원은 2012년 3월 1일부로 통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전환·임용한다. 추후 교·직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통합대학교의 교·직원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민을 따뜻하게 증산증을 두렵게



교육과학기술부

+ 한지
- 행정실 -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립대학 통폐합 신청 안내

1. 관련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 및 제2조의4

2. 상기 조항에 의하여 동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 통·폐합을 희망하는 대학에서는 【붙임】의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작성하여 '11.4.29(금).까지 사립대학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2학년도 통·폐합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입시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8월 말까지 통·폐합 승인 여부를 통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립대학 통·폐합신청서(심사표 포함)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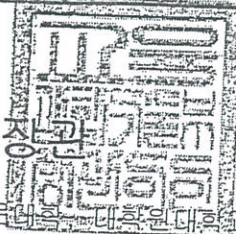
을
사
제
5
호
증

결	담	담	팀	장	처	장	부	총	장	수	석	부	총	장	총	장
재	[Handwritten signatures in each cell]															

접수일자: 2011. 3. 28

접수번호: 48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학교법인, 사립대학교, 사립산업대학교, 사립전문대학, 대학원대학교

행정사무관 최윤정 / 사람대학제도과장 전결 03/25 김대성

협조자

시행 사립대학제도과-784 (2011.03.25.) 접수 경원대학교-1027 (2011.03.28.)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학술연구정책실 / www.mest.go.kr
사립대학지원과

전화 02-2100-6930 / 전송 02-2100-6935 / chc: yj@mest.go.kr / 공개

총 결 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와 ○○○대학(교)의 통·폐합 승인 신청서

【전임교원 연차별 확보 계획】

연도별 확보율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교사 확보율】

통·폐합전 ('08.3.1)			통·폐합 후 ('12.4.1)				
대학별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캠퍼스별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단위 : m)

【교지 확보율】

통·폐합전 ('08.3.1)			통·폐합 후 ('12.4.1)				
대학별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캠퍼스별	기준면적	보유면적	확보율

(단위 : m)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통·폐합전 ('08.3.1)			통·폐합 후 ('12.4.1)			
법인명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수익용기본 재산보유액	확보율	연간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수익용기본 재산보유액	확보율

(단위 : 백만원)

【대학운영경비 부담율】

법인명	통·폐합전 ('08.3.1)		통·폐합 후 ('12.4.1)	
	수익용기본재산에서발생한소득액	대학운영경비총액에 부담율	수익용기본재산에서발생한소득액	대학운영경비총액에 부담율

(단위 : 백만원)

학교법인○○○○○이사장(직인)

○○○대학(교)총(학)장(직인)

○○○대학(교)총(학)장(직인)

2011.

【서식 1】

□ 대학 일반현황 (‘11년도 현재) : 통·폐합 대학별로 각각 작성
 ○ 대학명칭, 소재지, 교원현황, 직원현황, 학생수, 대학연혁, 조직도, 대학발전
 계획, 특성화 추진 실적 및 계획, 기타 각 대학의 현황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 특성화 계획 : 특성화 분야 설정 및 특성화 방향으로 학내 자원(교원, 학생, 예산 등)
 제배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서식 2-1】

□ 학교 현황 : 통·폐합하는 2개 대학 각각 작성
 ○ ‘08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교)명 : _____]

계열(a)	단과대학	모집단위			‘08입학정원
		대학	학부	학과(전공)	
계					

※ 작성요령

- ① 계열(a)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9항에 의한 계열을 기재하되,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작성함.
- ② 분교,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에서는 대학 전체분과 분교, 분교, 캠퍼스별 입학정원을 작성하여 제출
- ③ ‘08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작성(모집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 ④ 모집단위 란에는 모집단위 명칭과 그 입학정원을 기재함.

[서식 2-2]

○ 편제정원, 재학생 수 입학정원 충원율

계열	편제정원	재학생수	입학정원 미 충원율			비고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① 계열 구분 요령은 [서식 2-1]과 같음
- ② 편제정원과 재학생 수는 매년 4. 1기준으로 작성하되,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 제출하여 수리한 통계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 ③ 입학정원 미 충원율은 입학정원(모집정원이 아님)/미충원 인원 (미 충원율)로 표기함
- ④ 모집단위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열별로만 작성하되, 미충원율이 10%이상 되는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별지로 제출

[○○대학 모집단위별 미충원 현황]

모집단위	입학정원 미 충원율			비고
	'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3-1]

○ 교사확보율 (편제정원 기준)

계열	편제정원 수 (A)	학생1인당 면적(B)	기준면적 (C)	보유면적 (D)	보유율(%) (D/C)×100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계					

※ 작성요령

- ① 편제정원(A) : '08학년도 기준 편제정원
- ② 기준면적(C) : 편제정원 수(A)×학생1인당 면적(B)
- ③ 보유면적 : '08. 3.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

○ 교사확보율 (재학생 기준)

계열	재학생 수 (A)	학생1인당 면적(B)	기준면적 (C)	보유면적 (D)	보유율(%) (D/C)×100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계					

※ 작성요령

- ① 재학생 수(A) : 2008. 3. 1기준 등록된 학생 수
- ② 기준면적(C) : 재학생 수(A)×학생1인당 면적(B)
- ③ 보유면적 : '08. 3.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면적